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71,240,586	5,137,218
일반회계	149,717,328	4,491,520
특별회계	21,523,258	645,698
기타특별회계	21,523,258	645,698
의료급여기금	343,972	10,319
주거환경개선사업	513,445	15,403
주차장	20,392,677	611,780
지하수관리	246,691	7,401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6,473	79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811,562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금회 추경외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교부되는 국·시비보조금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자원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